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5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희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강승규
박준태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 김도읍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2. 지능형 로봇기업 현장연수사업
3. 지능형 로봇기업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지능형 로봇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사업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고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u> <u>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u> <u>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u> <u>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u> <u>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u> <u>사업</u> <u>2. 지능형 로봇기업 현장연수사</u> <u>업</u> <u>3. 지능형 로봇기업 임직원의</u> <u>능력개발을 위한 사업</u> <u>4. 지능형 로봇기업의 수요에</u> <u>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u> <u>업연계사업</u> <u>5.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u> <u>구시설·장비의 확충사업</u> <u>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u> <u>사업</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전문인력 양성사업</u> <p><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u> <u>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u> <u>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업·</u></p>

대학 및 연구소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

<신 설>

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고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